



일본의 민영 건강·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 신설 주요내용

이상우 수석연구원

요약

■ 일본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간병보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2012년 민영 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함. 신설된 동 소득공제제도는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및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과세 소득자에게 연간 6만 8천 엔까지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임. 이는 민영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의 보완적 기능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함. 이에 따라 민영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. 향후 우리나라도 공·사 건강보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단일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 등 기능별로 세분화된 보험료 소득공제의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■ 일본 정부는 민영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 소득세법을 2012년부터 시행함.

● 동 소득공제제도 신설의 주요 배경은 최근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간병보장 등의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공·사보험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임.

■ 보험료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세제적격 보험에 가입한 경우,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 제도임.

● 일본의 보험료 소득공제는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여 민영보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23년 처음으로 생명보험에서 도입됨.

● 이후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후소득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1984년 세법 개정에 따라 실시됨.

■ 일본의 보험료 소득공제 체계는 크게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와 손해보험료 소득공제로 나누어짐.

- 생명보험료 소득공제(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전)는 다시 일반 생명보험료(보장성보험) 소득공제와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구분되며, 손해보험료 소득공제는 단기보험계약과 장기보험계약 소득공제로 구분됨.
-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보험료 소득공제제도가 존재하는데 반하여 일본은 보험의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 보험료 소득공제제도가 존재하는 차이가 있음.

〈그림 1〉 일본 소득세법 개정 전후 보험료 소득공제제도 변화

〈개정 전〉	⇒	〈개정 후〉
■ 전체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 - 소득공제 한도: 연 17만 엔(지방세 포함)		■ 전체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 - 소득공제 한도: 연 19만 엔(지방세 포함)
•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- 소득공제 한도: 연 8.5만 엔(지방세 포함)		•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- 소득공제 한도: 연 6.8만 엔(지방세 포함)
• 개인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- 소득공제 한도: 연 8.5만 엔(지방세 포함)		• 건강·간병보험료 소득공제 - 소득공제 한도: 연 6.8만 엔(지방세 포함)
※ 각 소득공제는 소득세 5만 엔, 지방세 3.5만 엔을 합산한 연 8.5만 엔 한도임.		•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 - 소득공제 한도: 연 6.8만 엔(지방세 포함)
		※ 각 소득공제는 소득세 4만 엔, 지방세 2.8만 엔을 합산한 연 6.8만 엔 한도임.

자료: 일본생명보험협회(2012).

■ 개정 소득세법 시행(2012년 시행) 후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는 개정 전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기존의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에서 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가 분리 및 신설됨.

- 이에 따라 현재 생명보험료 소득공제는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(보장성 생명보험), 건강 및 간병보험료(생보·손보) 소득공제,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더욱 세분화됨.
- 동 소득공제는 2012년 이전에 가입한 기존 보험계약자의 경우 종전의 소득공제가 보험계약 종료 시점까지 적용되며, 2012년 이후에 가입한 신규 보험계약자의 경우 새로운 소득공제가 적용됨.
- 동 소득공제 한도액은 개정 전 일반 생명보험료, 개인연금보험료를 합산하여 총 17만 엔이었으나, 개정 후 일반 생명보험료, 건강 및 간병보험료, 개인연금보험료를 합산하여 총 19만 엔으로 상향 조정됨.
 - 다만, 각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의 한도 합산액(각 6.8만 엔, 총 20.4만 엔)을 초과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총 한도액인 19만 엔의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지원됨.
 - 또한, 각 소득공제는 소득세(4만 엔) 및 지방세(2.8만 엔) 한도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.

■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변경된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세제적격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- 소득공제 대상 보험상품은 2012년 이후에 체결된 사망 또는 생존을 원인으로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및 공제계약을 대상으로 하며, 저축성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함.
- 동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회사, 우체국보험, 공제사업자로 제한됨.
- 계약요건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, 기타 가족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계약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대상으로 함.
-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(연간)은 6.8만 엔까지임.

■ 신설된 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의 세제적격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- 2012년 이후에 체결된 질병 또는 상해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중에서 의료비 지출을 원인으로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및 공제계약이 있음.
- 동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회사, 손해보험회사, 우체국보험, 공제사업자임.
-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 상품도 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함.
- 계약요건과 소득공제 한도액은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와 동일함.

■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에 따라 전체 생·손보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됨.

- 최근 일본의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, 2007년 지진보험료 소득공제제도의 신설과 2012년 건강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 신설에 따라서도 상향 조정되고 있음.
- 생·손보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개정 전 24.5만 엔이었으나 개정 후 26.5만 엔으로 상향 조정됨.
- 생명보험료와 손해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개정 전 각각 17만 엔과 7.5만 엔, 개정 후 각각 19만 엔과 7.5만 엔 임.

■ 일본의 보험료 소득공제제도의 특징은 기능별 세분화된 보험료 소득공제가 존재하며, 연간 보험료 납입금액 구간에 따라 보험료 소득공제가 차등하게 지원된다는 것임.

- 대표적인 사례로 건강·간병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 납입보험료가 2만 엔 이하의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의 소득공제가 지원되지만 4만 엔, 8만 엔 초과에 경우에 각각의 납입 보험료 구간에 따라 차등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됨.

〈표 1〉 건강·간병보험료 납입구간별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

연간 보험료 납입금액 구간	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
2만 엔 이하	• 납입보험료 전액
2만 엔 초과 ~ 4만 엔 이하	• 소득세: 납입보험료 × 1/2 + 1만 엔 • 지방세: 납입보험료 × 1/2 + 6천 엔
4만 엔 초과 ~ 8만 엔 이하	• 소득세: 납입보험료 × 1/4 + 2만 엔 • 지방세: 납입보험료 × 1/4 + 1.4만 엔
8만 엔 초과	• 소득세: 4만 엔 정액 • 지방세: 2.8만 엔 정액

주: 1) 지방세는 최고 2.8만 엔까지 소득공제 적용.

2) 일반 생명보험 및 개인연금보험료도 동일 적용.

3) 손해보험료도 납입구간별 차등화된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적용.

자료: 일본생명보험협회, 일본손해보험협회(2012).

■ 일본의 동 소득공제 도입 사례는 정부가 민영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.

- 동 소득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향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, 민영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 가입률 제고 등 민영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- 향후 우리나라도 민영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일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 [kiri](#)